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74

발의연월일: 2020. 11. 16.

발 의 자:김상훈·태영호·김희국

윤두현·양금희·한무경

강기윤 · 조수진 · 박대출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로서 2020년 1 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택시연료·차량가격 등 운송원가의 상승을 고려할 때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위 특례가 종료될 경우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호의2, 제9호의3"을 "제9호의2"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9호의3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	
호의2, 제5호, <u>제9호의2, 제9호</u>	제9호의2
<u>의3</u> ,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	
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	
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u>적용한다</u> .	<u>적용하며, 제9호의</u>
	3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
	한 것에만 적용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